

2024년 2월

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세부내용

1.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위는 플랫폼시장의 독점력 남용 시정 및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집중 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 민생안정·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방안 추진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율방안 마련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의 당면 애로사항 중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결제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율, 긴 정산주기로 인해 소상공인(가맹점주 등)의 부담이 큰 모바일상품권 관련 거래관행 개선 숙박앱 입점업체(숙박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광고비 경감을 위해 상생안 마련을 지원하고, 배달앱·오픈마켓 상생협력 성과 점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약관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사업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 주요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신유형플랫폼(예: 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 등 적극 시정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의식주**(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 등), **금융·통신**(담보대출, 국고채, 통신사 판매장려금 등), **중간재**(스테인리스강선, 아연도금철선, 방음방진재, 소방내진재 등)의 3개 분야를 **중점 감시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반도체,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점검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분야	내용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 분야 핵심부품인 반도체 유통·판매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지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불공정 거래행태 시정* *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2023.12.) 결과를 활용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 및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자*의 불공정거래관행 점검 *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이외에도 (i) **신성장 시장(AI, 클라우드·OTT, 기후테크)**의 경쟁 및 혁신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ii)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 외부출자(40→50%) 및 해외투자(20→30%) 상한 확대 등 **규제 완화**, (iii) 독과점 및 혁신저해 등 경쟁제한성에 따라 M&A를 심층 심사 또는 신속 처리하도록 하는 **M&A 심사제도 개선** 등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 활성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강화

공정위는 경기침체에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제반 보호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 경제적 약자 피해는 신속히 시정·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개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의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시정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등)을 다각도 전개하고, 위 제도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예: 쪼개기계약, 미연동강요) 철저히 감시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두계약,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예: 소프트웨어, 생활가전)을 집중 감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범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주요 산업기재(예: 자동차부품, 에너지 설비) 분야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을 집중 감시

<p>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하고,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가맹본부(예: 외식업종)의 불공정행위 점검·시정 중소납품업체 대상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유통업자→납품업자(본사)→대리점)에서 심화되는 불공정행위(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민생업종(편의점·가구·타이어)에서의 불공정관행(불이익제공, 부당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을 집중 감시
<p>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공정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공정위 보유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기 위한 방안 마련(공정거래법 개정 등)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유통3법(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급법 개정)

3.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공정위는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들의 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p>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식품업체와 자율협약 이행을 통해 제품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정보포털(소비자원 "참가격")의 정보제공 대상 품목도 확대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고시 개정)
<p>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결제수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기프트콘")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환불금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 추진(표준약관 개정) 유통업체가 모바일앱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금(포인트)의 짧은 유효기간(소멸시효)을 연장하도록 개선방안 마련
<p>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상품 비교정보 활용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의 가성비 제품을 모아 소비자 노출도가 높은 온라인상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분기별로 배포·홍보

한편,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SNS, 다크패턴, 확률형 게임아이템**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 입점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의 관리책임** 및 **정보제공**(입점 사업자의

면허 여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 등) 기능 강화(자율규제), (ii) **해외사업자**(숙박플랫폼, 온라인종합쇼핑몰 등)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부과**(전자상거래법 개정), (iii)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AI,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배상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입증책임도 완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예: AI 등을 제조물 범위에 포함, 결함추정 요건 완화 검토,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마련 및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시 소관부처의 조정,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규범**(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 거래환경의 복잡화·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i) 거짓정보 확산 가능성이 큰 **미용 분야**(성형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건강관리기기**(안마의자 등) 성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및 그린 워싱(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 국민 일상에 스며든 **부당 광고에 대한 밀착 감시**, (ii) **선불식 여행상품** 등록 및 선수금 의무보전비율 준수(금융기관에 선수금의 30% 예치) 여부 및 전자제품 할인을 미끼로 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기만행위**, 국민 여가생활 분야(**자연휴양림, 캠핑장** 등)의 불공정약관(사업자 면책조항 등) 등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시정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i) **식음료·제약·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 중점 점검(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정점유율 및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도 엄중 감시)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자금보충약정, TRS), 위장계약** 등의 외형을 갖추어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 (ii) **TRS(총수익스왑)**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부당 내부거래 혐의 포착을 위해 제공받는 **국세청 과세정보 범위의 확대**(기존에 제공받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과세정보 외에 중견집단에 대한 과세정보 추가, 부당성 판단에 참고 가능한 자료 확대)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 회피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및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내용
대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GDP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 동일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도 반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구분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 (다만,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사유 마련)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영위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공정거래법 개정) * (현행) 피취득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선) 금융·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등 • 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법에 명시·열거하여 제도의 효과성 제고*(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 * 현재는 표준산업분류상 'K. 금융 및 보험업 영위회사'로 일괄 규정

5.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공정위는 다음과 같이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및 분쟁 해결**을 장려하여 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관 협업 및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자율적 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해 CP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신규 인센티브 적극 발굴 •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 심사지표 간소화, 지표 내용 명확화 등 개선 추진
자율적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제도의 통일성·완결성 확보 *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 통합 • 제도적 장치를 폭넓게 신설·보강하여 분쟁조정 신속성·효율성 제고
협업·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이슈, 슈링크플레이션, 건설업 부실 등 민간의 정보와 협력이 필요한 정책 현안 대응시 기업 및 유관단체(소비자단체, 조정원 등)와의 협업 활성화 • 공정위 데이터포털에 정부기관·민간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연계·수집하여 법 위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 * 사업자 정보(예: 국세정·조달청), 민원·분쟁 관련 정보(예: 권익위·조정원·소비자원) 등 29개 주요 정보를 집약하고, 머신러닝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값 제공 등

Authors

정영진

02-3703-1776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02-3703-1261
gokim@kimchang.com

고경민

02-3703-1431
kmkoh@kimchang.com

김경연

02-3703-5889
kyoungyeon.kim@kimchang.com

전기홍

02-3703-1618
khchun1@kimchang.com

남윤식

02-3703-1085
yoonsik.nam@kimchang.com